

프랑스 공증제도에 관하여

김 태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I. 들어가는 글¹⁾

공증제도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나타는데, 대체로 영미법계 국가의 공증인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문·대서 등과 같은 법률업무를 독점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 반면, 대륙법계 국가의 공증인은 공공적 성격을 띤 자유업의 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 공증인은 이러한 공공적 성격을 띠면서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그 활동이 상당히 적극적인 상황으로서,²⁾ 단순히 문서의 공적 증거력을 확보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법률생활상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으로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 공증제도는 현대 공증법의 기초인 1803. 3. 16.자 법률(Loi contenant organisation du notariat, loi 25 ventôse an XI)이 제정된 이후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이를 기초로 공증제도를 형성하면서 라틴계 공증제도를 대표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³⁾ 1803. 3. 16.자 법률 제1조 및 1945. 11. 2.자 오르도낭스⁴⁾ 제1조에 의하면, 공증제도는 공증인(Notaire)이 계약 기타 법률행위 등에 대하여 공적증명력을 가지게 하는 제

1) 프랑스 공증제도를 소개한 국내 문헌을 보면, 법무부, 『각국의 공증제도』, 법무자료 제140집(1990.), 9면 이하; 한건우, “프랑스 공증제도에 관한 고찰”, 경북대 법학논고 제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69면 이하 등이 있다. 이하의 내용은 위 자료들을 기초로 하면서 그 이후의 여러 자료를 토대로 보완한 것이다.

2) 다만, 최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프랑스 공증인의 영역확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http://fr.wikipedia.org/wiki/Notaire#Statistiques>, 2010. 1. 8.자 검색

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공증인은 계약을 비롯한 법률행위에 공적 증명력을 부여하는 공무담당자 내지 사법보조인(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⁵⁾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공증인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된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법행정사무 등에 관하여 고객에게 조언을 주는 자유직업인으로서의 역할도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공증인의 역할과 성격은 다음과 같은 프랑스 공증제도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업무영역에 안주하지 않고 건축, 구분소유, 기업자문 및 승계 등과 같은 새로운 법현상에 대응하여 전문지식을 축적하는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해 온 점, 둘째, 공정증서의 증명력뿐 아니라 공증인의 조사 및 조언의무를 통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 왔다는 점, 셋째,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공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정비한 점, 넷째 공증인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증인임용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개업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연구 및 정보 체계를 강화한 점, 넷째, 전문적 민사조합의 성격을 가진 공증인회를 통하여 신규공증인의 개업을 용이하게 하고, 전문화가 가능한 합리적인 인적, 물적 조직을 구축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뒤에서 보듯이 프랑스 공증제도는 변호사가 아닌 고유의 법률전문가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것으로서, 일본을 거쳐 독일의 제도를 계수한 우리의 공증제도와 업무영역이나 역할 등 여러 측면에서 상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공증제도를 개선하는데 일정 부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하에서 법령 등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프랑스 공증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프랑스 공증제도의 연혁, 법원 및 역할

1. 공증제도의 연혁⁶⁾

3) 전병서, “공증인 양성, 임명제도의 검토”, 법학논집 제32집 제2호, 76면; 유럽연합 국가 중 21개 국가가 라틴계 공증제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4) L'ordonnance 45-2590 du 2 novembre 1945 relative au statut du notariat 제1조에 의하면, 공증인은 문서 및 계약의 당사자들이 공공기관의 문서에 내재되어 있는 공증력을 당사자들이 관련된 문서 및 계약에 부여하기를 원할 때 이를 접수하고 문서의 작성 및 계약의 체결일자 확인, 문서 및 계약의 보존 및 등본의 발급과 이의 발송을 위해 창설된 공무담당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는 소송대리인, 집행관 등과 마찬가지로 법원 부속 관리 내지 공무담당자라고 호칭되는 것인데,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을 보면 엄격한 의미의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공증인제도는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바빌론, 이집트, 그리스 시대로부터 거슬러가지만 그 근간은 로마법 체계 및 프랑스혁명 이전의 구체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연혁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공증인의 기원은 3세기 경의 로마제국의 국가계약을 공증하는 공무원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원로원 의원(curiales)이 공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였으나, 샤를마뉴 대제의 805 법령집에서 처음으로 *judices cartularii*라는 공증인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당시의 공증인은 영주나 왕실법원의 단순한 서기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법률대서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도록 하는 외에는 그 자신이 법률대서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 대략 11세기경부터 소송업무와 법률대서업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후 12세기에 들어와 문서의 등기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1270년 생루이왕이 파리법원에 60명의 공증인제도를 형성한 데다가 1302년 필립왕이 공증인임명권을 보유하게 되면서 그 무렵 공증인의 역할이 발전·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 공증인수수료 기준을 규정하고 등기소를 만들면서 등기소에 계약당사자의 이름과 조건들, 유산 및 수수료의 총액 등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인 1539년경 프랑수와 1세에 의하여 공증인제도를 조직화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재정 필요 상 공증업무를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증비용을 증액하고 공증사무소를 증설하기도 하였다.⁷⁾ 프랑스 혁명 이전인 봉건시대의 공증인은 크게 왕실공증인과 영주공증인으로 구별되는데, 왕실공증인은 프랑스 전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파리 등 일부의 공증인을 제외하고는 왕실재판소와 지방관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공증인이었고, 영주공증인은 재판권을 가진 영주, 로마교황의 공증인에 의하여 임명된 공증인이었다.

프랑스 혁명기에는 공증인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나폴레옹 당시에 프랑스 공증제도의 근간이 되는 1803. 11. 25.자 법률이 제정된 것을 비롯하여 여러 후속 법령들이 제정·개정되면서 오늘날 프랑스 공증인제도의 기초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⁸⁾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증인의 지위에 관한 1945. 11. 2.자의 오르도낭스에서 공증인제도를 조직화하였을 뿐 아니라 최고공증인위원회

6) Jean-François Pillebout 외 1, *Droit professionnel notarial*, LexisNexis(7판), 15-16면; 법무부, 앞의 책, 10면~11면

7) 이때부터 *notaire*라고 부르는 관리는 원본문서만 작성하고, *tabellion*이라고 불리는 관리가 등본과 사본의 작성을 맡았으며, *garde scel*이라고 부르는 관리는 문서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는 업무를 관장하고, *garde note*라고 부르는 관리가 모든 증서를 보관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루이 14세때인 1706년에 이르러서야 분할되었던 공증업무가 하나로 통일되게 되었다.

(Conseil supérieur du notariat)를 창설하면서 공증인 내부기구를 체계화하였다.

프랑스에서 현재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일종의 공무담당자로서, 국가가 부과한 직업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소속되어 있는 공증인회의소와 검사가 공증인의 의무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또한 공증인은 자신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부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규정에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인으로서 공증인의 업무에 대하여 고객에게 책임을 진다. 전통적으로 프랑스 공증인의 업무영역은 가족법과 부동산거래 분야였는데 오늘날 회사법, 도시계획법, 지방자치단체법, 상사거래, 회사조세분야 또는 개인자산관리 등으로 그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 공증에 관한 법원(法源)

프랑스의 공증제도와 관련하여 공증인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련한 내용은 1803년 법률 및 그 후속 법령인 1945. 11. 2.자 오르도낭스 등에 규정되어 있지만 공증행위의 정의와 효과 등과 관련한 실체적 내용은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다.⁹⁾

가. 법령

공증제도에 관한 성문법원으로서 법률은 민법전, 민사소송법전, 기타 아직 법전화되지 않은 법률들이 있다.

첫째, 민법상 공증과 관련된 조문들을 들면 민법 제1317조 내지 제1321조가 공증행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공증행위와 관련한 민법 규정은 증여행위(제931조), 유언(제969조, 제971조, 제976조), 직계존속에 의한 재산분할(제1075조), 변제자대위(제1250조 제2항), 부부재산계약(제1394조), 선취특권과 저당권(제2129조 이하) 등에 관한 규정이다.

8) 프랑스 대혁명 직전에 4만 명에 달하던 공증인이 대폭 감축되었는데, 공화력 풍월 법률에 의하여 면소 제지마다, 그리고 인구 10만명에 해당하는 도시에 한사람씩의 공증인을 두기로 하고, 인구 6천명이 초과할 때마다 1인 이상의 공증인을 두기로 하였다. 그 후 1958. 12. 22.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와 관할은 법무부장관의 부령에 의하여 각 지방법원마다 두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9) 참고로 프랑스의 법령체계를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오르도낭스, 데크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오르도낭스(ordonnance)는 정상적으로는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정부가 시정방침의 수행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는 것을 말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행정입법으로서 가치를 가지나, 승인된 후에는 법률로서 가치를 취득한다. 데크레(décret)는 개입영역에 따라 독자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되는데, 발령권자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으로 구별된다.

둘째, 민사소송법상 공증과 관련 있는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7절, 제3소절의 서면증거에 관한 이의, 제2장 제303조 내지 제316조의 공증행위에 대한 허위진술 등이 있다.

셋째, 공증인 조직과 지위, 자격, 징계, 행위 등에 관한 기타 법규등이 있다. 여기에는 1803. 3. 16. 법률을 비롯한 그 후속법령인 여러 오르도낭스, 데크레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나. 관습법

관습법이란 어떠한 형태의 명문상의 공포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규로서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계속된 관행을 말한다. 따라서 공증에 관한 관습법에는 각 지방공증인회에서 업무수행의 기준으로 삼고 있던 것을 명문화하여 법무부와 최고공증인위원회의 통일화 작업을 통해 모든 프랑스 공증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공증인규정(Le règlement national du notariat)¹⁰⁾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다.

다. 판례

공증제도에 관한 프랑스 판례는 주로 공증인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공증인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원칙이나 의무 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3. 공증인의 현황 및 역할

가. 공증인 현황¹¹⁾

- 프랑스 공증인은 2009. 6. 1. 현재 8,901명이 등록되어 있고, 그 중 2,362명이 여자이다. 또한 공증인 중 72% 이상이 2,714개의 공증인회사에서 근무하며, 공증인 평균 연령은 48세이다.
- 공증인 사무실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4,533개(그 외에 1,314개의 분사무소가 있음)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공증인과 직원은 모두 56,000명 정도이고 그 성비를 보면 여

10) 1979. 12. 24. 인가받아 여러 차례 수정인가를 거쳐 2004. 3. 4. 현재에 이르고 있다.

11) http://www.notaires.fr/notaires/page/notariat-en-chiffres?page_id=50, 2010. 1. 11. 검색

자가 80%나 된다.

나아가 매년 공증활동과 관련한 평균적인 통계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증인들이 만나는 고객이 2천만 명 정도이고, 취급하는 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6,000억 유로에 해당하며, 총 400억 원 가량(420만 개의 문서)의 공증행위를 하며, 매출액이 60억 유로에 달한다.¹²⁾ 이러한 활동 현황은 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법률전문가의 활동현황과 대등할 정도라고 한다.
- 사건 비중에 따른 공증활동 통계를 보면 부동산 관련 공증이 49%, 친족, 상속 사건 공증이 26%, 채권관련 공증이 14%, 기업자문 등 관련 공증인 7%, 부동산 중개 관련 공증이 4% 정도를 차지한다.

나. 공증인의 역할 강화

공적증명력 창출이 공증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공증인의 역할은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에 한정되지 않고 계속 확장되고 있다. 즉 국가 공증인규정(Le règlement national du notariat)에 의하면 공증인은 의뢰받은 당사자 개인, 기업 및 공공단체의 계약을 공평하게 중재하는 동시에 계약 등 거래관계의 안전과 도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계약 문구 작성 등과 관련하여 법적 내지 공적 증명력을 창출하는 것 이외에도 당사자를 위한 법률자문, 중재 내지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한다.¹³⁾ 공증 실무에서 이러한 조정기능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판례에서 공증인의 책무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에 있다.¹⁴⁾

프랑스에서 공증인은 다양한 법률지식뿐 아니라 재무, 경영, 사회심리 방면의 식견을 가진 재산관리자로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견지에서 재산문제를 치료하는 의사(médecin du patrimoine)로 불리기도 한다.

공증인의 이러한 활동영역은 예컨대, 부부재산제 형성, 입양, 유언, 주택마련, 기업설립 또는 양도, 임차, 상속재산관리, 은퇴준비, 유족연금 등에 걸쳐 있다. 이러한 활동영역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사법작업을 사건 수로 파

12) 참고로 2008. 1. 1. 현재 프랑스의 1인당 GDP는 28,356유로이고, 인구는 61,538,322명이다.

13) 프랑스 판례에서도 공증인에 대하여 공적 증명력을 주는 역할뿐 아니라 공평한 조언자 내지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파기원 1부 2003. 2. 18. 선고, 2003-017960 판결 등 참조).

14) 파기원 민사1부 1989. 7. 5 선고, 1989-702690 판결 등 참조

악할 때 공증인이 처리하는 업무 비중이 45% 정도라고 할 정도로 공증인은 프랑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공증인의 책임과 이에 대한 내부규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한 감독기관으로서 최고공증위원회(Conseil supérieur du notariat)와 같은 내부단체를 두고 있다.

Ⅲ. 공증인 - 공증제도의 인적 요소

1. 공증인 자격

가. 공증인 자격에 대한 규정

프랑스에서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의 감독을 받는다. 이는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무담당자로서 준공무원적 성격을 반영한 것인데, 최근 들어서는 자유직업인으로서의 법률종사자라는 측면도 강조되고 있다.¹⁵⁾

이러한 공증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공증인직 양성 및 공증인의 업무개시 요건에 관한 데크레¹⁶⁾ 제3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적극적 요건을 보면, 프랑스 국적을 요구하고, 법학석사 과정에서 60학점을 취득하거나 메트리즈 학위를 소지하거나 또는 법무부장관과 고등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발하는 명령에 따라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제5호), 여기에 추가하여 고등공증인학위(Diplôme Supérieur du Notariat : DSN) 또는 2년 정도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제6호), 2008. 1. 1.부터 공증인으로 임명되기 위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발한 명령에 의하여 제정된 공증인의 본분과 규율에 관한 프로그램 및 공증인 직무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이 요구된다(제7호).¹⁷⁾ 나아가 소극적 요건을 보면 결격사유로서, 명예, 청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형사상 유죄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어서는 안 되고, 강제퇴직 또는 파면, 해임, 면직이나 승인허가의 취소 등을 받은 경력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개인 파산이나 기타 다른 처분을 받은

15) 프랑스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엄밀하게는 법조종사자(le professionnel judiciaire)와 법률종사자(le professionnel juridique)로 구분하는데, 법조종사자는 소송절차에서 타인을 대리하거나 변론하는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법률종사자란 소송외의 대리 및 보좌, 법률상담 또는 문서작성에 관한 업무 등과 같은 법률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16) Décret de 5 juillet 1973 제3조

17) Décret 73-609 du 5 juillet 1973. 제3조 제7호

상태에 있어서도 안 되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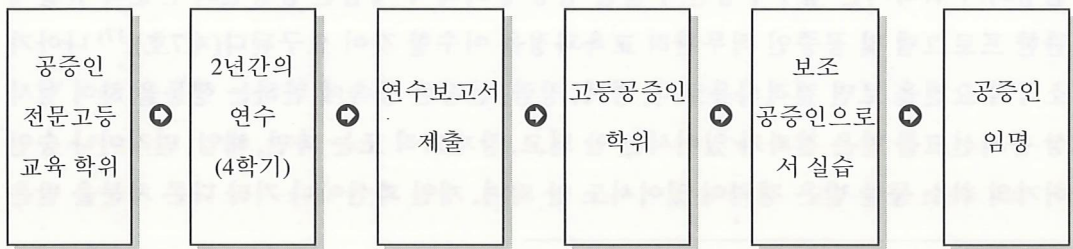
이와 같이 공증인이 되려면 프랑스 국민으로서 일정한 학력, 직업을 가지고 소정의 연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¹⁸⁾ 프랑스 국적을 요구한 것은 공증인의 준공무원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고, 소정의 학력을 요구한 것은 공증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프랑스는 우리와 달리 변호사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대학에서도 공증인양성을 담당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나. 일반적인 임명 내지 양성과정

프랑스 공증인 임명 내지 양성은 위 규정에 의할 때 대학석사 등 일정한 학력을 갖춘 이후에는 직업과정이라 할 수 있는 공증인양성기관과정(Voie professionnelle)과 대학과정(Voie universitaire)로 구분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대학과정과 직업과정으로 나누어 공증인양성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대학과정

대학에서 법학석사과정을 마친 지원자는 대략 9개월 정도인 공증인 전문 고등교육 학위(Diplôme de Études Supérieures Spécialisées en Notariat : DESSN 또는 Maste 1r)과정을 마친 후 고등공증인학위(Diplôme Supérieur du Notariat : DSN)를 수여하는 국립공증 직업교육센터 과정을 2년에 걸쳐 이수한다.¹⁹⁾ 필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실습보고서를 제출하여 통과되면 고등공증인학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그 이후 보조공증인으로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이론과 실습업무를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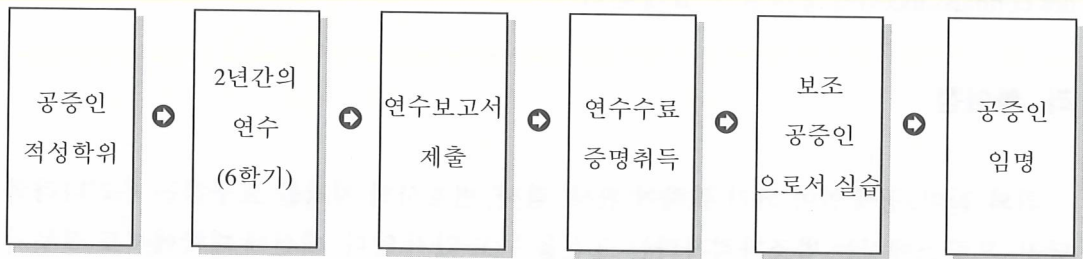


18) 프랑스인 여자에게 공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은 1948. 3. 29. 법률이 제정되고 난 후의 일이다.

19) 2006년도 기준으로 22개의 대학에서 DSN을 수여한다고 한다.

(2) 직업과정

대학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1990. 9. 1. 이후 다음과 같은 직업과정을 거쳐 공증인이 될 수 있다. 즉 대학석사과정을 마친 지원자²⁰⁾는 입학시험을 거쳐 국립공증직업교육센터에서 1년간 정규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공증인적성학위((Diplome d'aptitude aux fonctions de notarie)를 받게 되고, 다시 2년간 공증인 사무소에서 실습공증인으로서 실습을 하게 된다. 그 이후 논문과 실습보고서를 제출하여 규정된 학위를 취득하는데(le certificat de stage), 그 과정을 마치면 공증사무소에서 보조공증인(notaire assistant)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다. 기타 양성 과정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학석사와 같은 학력이 없거나 공증인자격시험 또는 공증업무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증인이 될 수 있다.

(1) 부수적 임용(Recrutement parallèle)²¹⁾

대학교수 등 이론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일정기간 공증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을 갖추었을 때 연수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즉, 일정한 기간 동안 법률실무를 담당한 자로서 그 업무처리능력을 국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자격증이 없어도 공증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판사, 법학교수, 법학박사과정 담당 강사, 대법원독점변호사,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고등법원대소사, 2년 이상 등록 법률상담원 업무를 행한 경력이 있는 자, 기업 법무실에서 8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20) 입학시험은 필기 및 구술로 되어 있고 민사법, 상사법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21) art. 4 du Décret du 5 juillet 1973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내부 임용(Recrutement interne)²²⁾

대학학위가 없더라도 공증사무소 직원으로서 일정한 경력과 능력을 구비할 경우 공증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9년 이상 공증인 직업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한 공증사무소 직원에게 대학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공증인자격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초급 사무소직원(clerc) 과정을 6년 이상 이수한 후 공증사무소 등에서 9년 이상 근무할 것이 요구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증인자격시험(examen de contrôle des connaissances)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라. 특이점

위와 같이, 공증인이 되기 위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법조자격자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에 대학에서도 실무가인 공증인 양성을 담당하면서 국립공증직업교육센터 등을 통하여 3년 정도에 걸친 이론과 실무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연혁적으로 볼 때 프랑스 혁명 이전에 4만 명에 달하던 공증인은 현재 8천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그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변호사,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가집단과의 경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 사회에서 공증인이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비중이 종전보다 낮아졌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최근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용 및 연수제도 등을 개선하는 시도를 계속하는 한편, 부동산공증 이외에 기업자문 등 다른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측면에서 공증인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 등을 통한 유럽통합의 차원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법률가들에게도 프랑스 공증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도 있다.

2. 공증인의 임명과 공증업무 개시²³⁾

22) art. 7 du Décret du 5 juillet 1973

23) 한건우, 앞의 논문, 80면 이하

임명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는 공증인 임명을 받아 개인공증사무소, 공증인회사의 소속 공증인, 또는 고용공증인으로서는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에 의하여 공증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데, 그 장소는 고등법원 관할 구역 범위 내에 한정된다.²⁴⁾ 원칙적으로 사무소에서 고객을 만나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인가받을 수도 있다. 공증인 임명은 승계에 의한 경우, 새로운 사무소 개설을 위한 경우, 결원이 있는 사무소를 위한 경우, 고용공증인의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 승계에 의한 공증인의 임명

전직 공증인의 상속자가 현업공증인의 임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먼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은 그가 공증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지방법원 소속 검찰청에 제출한다.

관할 검사는 신청인의 인성과 업무능력에 대한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접수하게 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가능한 한 공증인 직업교육원 또는 공증인학교로부터 모든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징계위원회의 의견이 45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도착되지 않으면 공증인의 신청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공증인 임명신청을 받은 검사는 신청에 관한 모든 서류와 함께 그의 의견을 적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나. 새로운 공증사무소 개설을 위한 공증인임명

새로운 공증사무소개설을 위한 공증인 임명은 사법관, 공증인, 공증인사무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서열을 정한 것을 참고하여 법무부장관이 선택한다.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의 임명에 앞서, 후보자들에게 임명신청서를 관할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할 기한 등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공증인후보자가 없거나 책임자가 없는 경우는 다시 새로운 후보자를 공모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공증인 책임자로 선발된 자가 선서를 하지 않아 직권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는 그 공증사무소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수락하지 않으면 새로운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24) 종전에는 거주지도 관할 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으나 1988. 7. 12.자 테크레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다. 결원된 공증사무소를 위한 공증인임명

공증인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공증인 승계인의 공증인임명을 위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증사무소는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결원이 있는 사무소로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공증사무소 개설을 위한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공증인을 임명하게 된다.

라. 고용 공증인 (Notaires salariés)

공증인 사무소 및 고용희망 지원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고용계약서와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3. 공증업무의 개시 및 자격기간 등

가. 공증업무 개시

공증인으로서 임명을 받으면 지방법원에서 선서를 하여야 하고 선서한 날로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공증인이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의 서명과 서명 끝의 장식글자를 관할 법원의 서기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임명된 달에 선서를 하지 않으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증인은 직권 면직된다. 전직공증인 승계자는 공증인선서가 있는 때로부터 자신의 공증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공증업무의 공동수행²⁵⁾

공증인은 공증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조직을 이루고 있다. 1966. 11.29. 법률에 의하면, 공증사무를 공동으로 맡아하는 공증회사와 공증인들이 각자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공증인회사의 두 종류가 인정된다. 이러한 두 종류 이외에도 민사상의 회사가 있다. 첫째, 사원들이 공동으로 공증업무를 수행할 때 그 회사를 공증회사라고 하는데, 공증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은 공증인자격은 있지만 공증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는 사람들로

25) 법무부, 앞의 책, 27면

구성되어 있다. 둘째, 공증인회사는 회사자체에는 공증사무소로서의 자격은 없지만 직원 각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써, 이는 동일 지방법원 관내의 공증인 사이에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다. 공증인 자격기간 등

공증인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 등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이상 공증인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²⁶⁾ 물론 공증인의 사망, 사퇴, 면직에 의하여 공증인 자격이 종료된다. 또한 공증인은 판사, 정부위원, 법원서기, 집행관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다.

고용된 공증인이 사직을 하거나 해고될 경우 지방법원 검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이후 5년 동안은 새로 임명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공증인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한편, 20년 이상 공증인 업무를 계속한 공증인 또는 10년 이상 공증인 업무를 계속하고 공증인관련 기관에 근무했던 전직 공증인의 경우 검찰총장이 공증인회의소와 지방공증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명예 공증인(notaire honoraire)이라는 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 명예공증인에게는 공증인회의소 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부여되고, 또한 공증인 관련 시험위원 등에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4. 공증인 조직 등

가. 공증인 관련 조직과 인력 개요

공증보조자(Les auxiliaires du notariat)는 공증인에 고용되어 공증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앞서 보았던 보조공증인이나 실습공증인을 비롯하여 사무소 서기(Clerc), 회계담당자, 비서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다.

나아가 공증인에 관련된 조직이나 기구로는 공증인 회의소, 지방공증인 위원회, 최고공증인위원회 등이 있다. 여기에 대하여는 공증인 지위에 관한 1945. 11. 2. 오르도낭스와 공증인 지위 적용을 위한 1945. 12. 19. 테크레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

26) 다만, 알자스-모젤 지방의 경우 예외적으로 70세 정년을 두고 있다.

증인 관련 상위조직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최고공증인위원회, 지방공증인위원회 및 공증인회의소

(1) 최고공증인위원회

파리에 있는 최고공증인위원회는 1945. 11. 2. 오르도낭스에서 창설된 공익 기관이다. 위 위원회는 공권력에 대하여 공증인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공증인에 관한 입법정책적 조언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공증인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각 지방공증인위원회(Conseils régionaux) 및 지방공증인 회의소에서 선출된 임기 4년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2년마다 절반 정도가 교체된다.

(2) 지방공증인위원회

지방공증인위원회는 고등법원 단위에 설치된다. 공증인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업공증인에 대한 연수와 다른 직역과의 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관할 공증인에 대한 징계권한도 지방공증인위원회로 이양된 상태이다.

지방공증인위원회는 당연직인 지방공증인회의소 의장들과 공증인회의소에서 선출된 임기 4년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2년마다 절반 정도가 교체된다.

(3) 공증인 회의소(Le Chambre de notaires)

공증인 회의소는 각 지방의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등에 있는 공증인 내부 조직인데, 현재 92개의 데파르트망 공증인 회의소와 33개의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공증인사무소는 소속 사무소의 공증인 중에서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각 지방의 공증인 회의소를 구성하게 된다. 공증인 회의소는 공증인 임명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소속 공증인 사무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 및 경영감사를 시행하고, 고객과 공증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할 수도 있다.

다. 기타 연구 조직

(1) 공증인을 위한 연구, 정보 및 문서 센터(Le Centres de recherche, d'information et documentation notariales, C.R.I.D.O.N.)

공증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교환을 담당하는 기구인데 소속 공증인을 위한 법률

자문, 문서발송, 교육세무나 및 전문잡지발간을 맡고 있다. 1962년에 리옹지역을 중심으로 창설되었고, 현재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설립되어 있다.

(2) 국립공증인직업교육센터(Centre National de l'enseignement Professionnel Notarial : CNEPN)

공증인 연수과정 지원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앞서 보았듯이 공증인 연수생들은 법학석사를 취득하였거나 공증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관련 직원 중에서 서류 전형 또는 시험을 통하여 선발되는데, 국립공증인직업교육센터는 이러한 공증인 연수를 위하여 2년 과정의 공증업무 연수를 실시한 후 논문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 합격한 연수생들에게 공증인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한다. 위 교육과정을 마친 연수생은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아 공증인 개업을 할 수 있다.

IV. 공증인의 권한과 직무내용

1. 개설

공증인은 공증인의 지위에 관한 1945. 11. 2.자 오르도낭스가 규정한 것처럼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공적증거력을 부여하거나 법률행위의 일시를 확정하거나 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의 발송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프랑스 공증인은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인증하고 원본을 보존하게 되는데 인증문서를 분실할 경우 “사적인 자료의 비고의적인 누설”을 위하여 관련 법원에 출석하여 원본의 내용을 입증하기도 한다. 또한 일정한 분야에서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집행능력을 가진 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프랑스에서 공증인에 의하여 공증받은 문서는 다른 문서보다 법적인 우선권을 가진다. 공증을 받은 문서내용은 관련자들에 대한 공증결과의 통보는 물론, 당사자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공공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공증문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증인에 의하여 보증된다. 또한 공증문서는 민법이 규정한 증거체계에서 우선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집행력이 부여된다.

한편 프랑스에서 공증행위는 결혼계약 체결, 부동산매매 또는 증여, 장래 완공예정인 부동산 매매, 사망 후의 부동산 소유변경, 저당권 설정 등과 같은 법률행위 및 세무분야에 관련되어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문 분야 등으로 그 역할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공증행위는 프랑스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법률자문행위는 외국 영

토에서도 가능하다. 공증문서는 사무소에서 보존되며 그 목록은 법원에 등록된다.

이하에서는 공증인의 권한 및 직무내용 등에 관하여 공증행위를 기본으로 하여 살펴본 후 행위 영역별, 나아가 부동산공증행위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구체적 직무내용

가. 공증행위 - 원칙적 직무내용

공증인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공적증거력을 부여하거나 법률행위의 일시를 확정하거나 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의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공증인의 직무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공증행위에 의한 공적 증거력은 서면 증거로서 진정성을 담보한다.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증인에 의한 증명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데크레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1,500유로)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여기에 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인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지 않으며, 상사영역 등 일정한 경우에만 증인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기 때문에,²⁷⁾ 프랑스에서는 분쟁 예방 차원뿐 아니라 실제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공증인을 통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증행위는 분실, 변경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집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증인의 권한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계약 등 법률행위의 접수권 및 공증권, ② 법률행위 날짜에 대한 공증권, ③ 접수된 법률서류의 보관권, ④ 서류의 등본과 사본의 우송권, ⑤ 공적 집행력 부여

나. 영역별 직무내용²⁸⁾

(1) 신분법상 행위

전통적으로 공증인이 담당했던 영역이다. 결혼계약, 부부재산계약, 부부간 증여, 유언, 상속에 대한 것이다. 유언장 등 관련 서류는 70년 이상(미성년자에 관한 것은 100년)

27) 민법 제1341조

28) <http://fr.wikipedia.org/wiki/Notaire#Statistiques>, 2010. 1. 8.자 검색

보관해야 한다. 또한 고객에 대하여는 공증의 효력으로서 증명력, 집행력 및 특정공증 일자의 효력을 보증할 의무가 있으며, 공정하게 자문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 분야

부동산 분야는 프랑스 공증인의 주요 활동 분야로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매매협상, 가계약 서명, 본서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공증인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의 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고객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시 증거력과 집행력 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등기소에 공시되어야 하는 모든 증서를 공증양식으로(en forme authentique)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공증은 거래 안전을 위한 이른바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이 사전에 부동산권리관계를 충분히 조사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채권계약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등기가 마쳐지므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²⁹⁾

(3) 기업 분야

기업 및 기업주의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공증인은 해당 고객에 가장 적당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때 공증인은 국가를 대리하여 기업주의 거주지 압류금지원칙 보호와 아울러 유럽 소재 회사의 적법성 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4) 농업, 환경 분야

공증인이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의 공증인은 그 곳의 주요 법조인으로서 농지개발 평가를 위한 농촌기금설립 및 양도 등을 주선하고 일정한 조건 내에서 제3자에게 농지를 양도하는 농지양도계약 및 양도대출금 계약 등을 공증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29) 김정현, “부동산등기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입법의 방향”, 법률신문, 1974. 10. 28.자 5면. 참고로 프랑스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취하여, 소유권은 ‘채권의 효력에 의하여 (par l'effet des obligations)’ 취득되고 이전되므로(민법 제711조), 등기는 단지 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이 있을 뿐이고,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219조).

(5) 지방자치단체 분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계획법, 국토개발법, 환경법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관련한 법률 등에 있어서 법률고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증인은 일정한 책임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법률적 권고, 법률분석 등에 관련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공증인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로서 기능한다고 한다.

다. 부동산공증을 중심으로 한 공증인 직무내용 고찰

프랑스 대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판시한 바와 같이 공증인은 단순히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식 등을 보완하여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고객의 손해 방지를 사명으로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보다도 공익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이른바 분쟁 이전 단계의 재판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불리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증인의 역할에 관하여 부동산공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합의형성 단계

우선 공증인은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고객의 합의형성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³⁰⁾ 프랑스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므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공증인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공증인은 부동산매매 등 협의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증인은 자신의 인적관계에 기초하여 부동산관리운영에 관여하는 조언자로서 기능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업무방식이 부동산중개업자와의 경쟁관계 등 여러 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부동산감정, 건축, 부동산법규 등에 관한 지식에 기초하여 부동산대출 설정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아가 부동산공증의 업무흐름을 보면, 매매당사자 사이에 일종의 합의를 형성한 후 가계약, 본계약 단계를 거쳐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구속력을 발생시킴과 아울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의무와 계약조건 적법성

30) 이하의 내용은 겸전 훈, “フランスの公證人” 시민のための 법률가, 종합특집シリーズ 24, 일본평론사 (1983) 186~188면 참조

및 유효성에 관련한 공증인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합의가 완성된 상태에서 단순히 이를 확인하는 대서자 내지 인증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합의 형성 단계에서 조기 개입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2) 공정증서 작성 단계

앞서 보았듯이 가계약 내지 매매일방예약이 체결된 이후 본계약 단계에서 공증인이 공정증서 작성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때 공증인은 증서작성의 전제로서 당사자의 인적동일성, 행위능력 내지 처분능력 제한 유무, 부부재산제, 대리권의 유무, 목적물의 동일성, 물리적 상황, 토지이용규제의 유무와 내용, 적어도 과거 30년 동안의 권리관계 변천현황,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규제 및 관리조합에 대한 부담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선매권자에 대한 통지 및 행정상 인허가신청, 대출절차 대행 등을 하게 된다. 이는 공증인이 적법 내지 유효한 증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고객인 당사자가 작성 내지 제출한 서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상의 오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증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공증인은 상당히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마치면 공정증서가 작성된다. 양 당사자와 공증인이 증서에 서명한다. 공증인은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할 뿐 아니라 위법 내지 무효로 인한 손해를 배제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엄격한 설명의무를 지게 되는데, 예컨대 금전소비대차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자산상태나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공증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증서내용은 상세히 기재되고 위에서 본 조사내용은 근거와 함께 기재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서작성일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기재를 한다.

(3) 사후절차

공증인은 자신이 작성한 증서의 등록과 부동산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세 등 세금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등기, 등록 및 대장명의자 이전절차가 함께 행해지고, 각종의 신청서 작성, 세금납부, 분필 및 합필절차 등도 공증인이 담당한다. 공증인은 이러한 절차를 마친 후 등기필증을 받은 증서를 교부받게 되는데,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이후에도 원본 보관 및 등·초본 교부를 책임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단계에도 관여한다. 원본 보존 기간은 영구적이며 12년 경과시 고문서관에 보관할 수 있다. 이러한 증서는 후임자에게 승

계되고, 공증사무소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라. 보수와 관련한 권리

공증인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보유한다. 이러한 보수는 공증인 보수결정에 관한 1978. 3. 8.자 데크레³¹⁾에 의해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는데, 매매, 결혼계약, 상속 등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보수체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공증인의 수입원천은 독점적 지위와 관련한 공증행위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상업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1) 독점적 지위와 관련한 보수

문서작성과 같은 각각의 법적 형식문 또는 매각가격 결정과 같은 가격의 일정 부분을 기준으로 보수가 결정된다. 공증인은 의뢰받은 업무 개시 이전에 고객에게 예상 가격을 통지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업무종료 후 모든 경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통고해야 한다. 공증인은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고객 대신 선납해야 하며 국가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상업적 활동과 관련한 보수

공증인의 독점적 활동에 따른 획일적인 보수체계와 달리 예외적으로 상업적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공증인과 고객 사이의 자유로운 보수체계가 인정된다. 예컨대 회사정관 작성, 회사자산 판매문서 작성 등에 관련한 보수는 자유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업적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공증인 사무소 연 수입의 6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V. 공증인의 의무와 책임

1. 개괄적 내용

공증인은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준공무원적 성격을 지닌 공무수행담당자이

31) Décret 79-262 du 8 mars 1978

므로 단순히 고객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전문가라기보다는 공적인 업무를 독립하여 공평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을 당시 이와 같은 내용의 선서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공적인 업무 성격상 공증인은 공증업무 고객, 공증인 동료, 공증업무 자체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형사상의 책임, 징계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공증인의 의무

공증인은 법원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준수한다는 선서를 하여야 한다. 공증인의 의무에 대하여는 1979. 12. 24.자 규칙(le règlement nationale approuvé par arrêté du 24 décembre 1979)에 상당 부분 규정되어 있다. 공증인은 타에 모험이 되게 품행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법률문화 및 사회경제 발전에 뒤처지 않도록 관련된 연수활동에 꾸준히 참석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여야 한다.

가. 다른 공증인에 대한 의무

공증인 단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동료 공증인에 대한 여러 의무를 부담한다. 동료 사이의 교분 내지 우의로 압축될 수 있다. 여기에는 다른 공증인을 도와주는 일, 다른 공증인의 고객을 존중하는 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증인은 징계절차에 신속히 답변을 하는 등으로 적극 협조할 의무도 부담한다. 공증인이 사직이나 사망할 경우 직인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고객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 자문의무

공증인은 단지 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고객에게 관련 법률행위를 설명하고, 권리의무를 제시하고 확인하는 등으로 고객의 이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 과정에서 공증인은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자신의 책임 아래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한다. 예컨대, 적법한 권원에 의한 재산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구체적인 공증절차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증인의 의무로서 그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

유무에 대하여는 공증인과 고객 사이의 위임계약 및 공증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 비밀준수의무

공증인이 공증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는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로서 공증인직을 사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226-13조의 비밀누설죄를 구성하거나 징계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또한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공증인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필요가 크므로, 공증인 단체 차원에서 비밀침해에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 예외가 인정된다. 첫째, 법률 등에 정한 경우로서 예컨대, 공적담당자들은 세무관서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Code général des impôts 100조 2항), 둘째, 1974. 8. 12.자 데크레 제16조에 따라 후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가처분에 의하여 채권자 상속인의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비밀준수의무와 배치되지 않으며, 셋째, 공증인 자신의 방어권을 위한 경우와 공권력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도 예외적으로 비밀준수의무가 후퇴될 수 있다.

3. 공증인의 책임

가. 형사 책임

공증인도 프랑스 국민이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는 당연히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프랑스형법전은 공증인이 그의 직업과 관련해서 저지를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일반인의 경우에 비해서 형을 가중하고 있다.

형법 제145조와 제146조, 제147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98조, 제3222-2조, 제432-12조, 제441-4조 등이 공증인에 대한 형사책임과 관련이 있는 규정이다.

실무상 주로 횡령, 배임이나 공문서위조 등과 관련하여 공증인의 형사책임이 문제된다고 한다.

나. 징계 책임

공증인회의소 징계위원회 등은 감사관과 회계전문가 등을 통하여 공증인 사무소에 대하여 매년 비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주로 공증문서 및 회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 및 고객의 신고 등에서 나타난 공증인의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 공증인회의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증인의 징계책임에 대하여는 집행관을 비롯한 다른 공무수행담당자와 마찬가지로 1945. 6. 28. 오르도낭스³²⁾와 1973. 6. 25. 법률³³⁾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³⁴⁾ 2004. 2. 11.자 법률³⁵⁾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설하는 소속 공증인회의소를 데파르트망(département)에서 레지옹(rég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인적친밀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레지옹에 기초하여 징계위원회를 공평하게 구성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한편 정직이나 면직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³⁶⁾

이하에서는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1945. 6. 28.자 오르도낭스의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징계절차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징계요구권자

감독관(Syndic)은 공증인사무소,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제6조).

(2) 징계사유 및 징계종류

공증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증인으로서 품위와 성실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제2조).³⁷⁾ 그 중 성문으로 된 규정을 보면, 민법, 1803년 법률, 1945. 12. 19.자 테크레, 징계위원회 규칙 등이 있다. 공증인은 사임한 경우라 하더라도

32) L'Ordonnance n° 45-1418 du 28 juin 1945 relative à la discipline des notaires et de certains officiers ministériels

33) La loi 73-546 du 25 juin 1973

34) 공증인 뿐 아니라 고등법원 대소사, 지방법원 대소사, 집행관, 감정인에 대하여도 위 규정들이 적용된다.

35) La loi 2004-130 du 11 février 2004 transfère la compétence disciplinaire

36) 재발방지경고, 정직, 면직은 지방법원에서, 나머지 경미한 징계는 지방공증회의소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이러한 이중적 방식은 법원서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37) 여기에는 법령이나 직업윤리규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

라도 업무수행 중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

징계 종류로는 근신(Le rappel à l'ordre), 단순견책(La censure simple), 정식견책(La censure devant la chambre assemblée), 재발방지경고(La défense de récidiver), 정직(L'interdiction temporaire) 면직(La destitution)이 있다(제3조). 정직의 경우 형법 제131-27조의 업무정지와 달리 5년 이상도 가능하다. 또한 정직, 면직에는 공증인 단체 가입이 영구적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징계에는 10년 이상 공증인 단체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제4조).

(3) 징계절차

검사는 지방법원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이 의무적이다. 만약 검사가 징계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이해관계인이 지방법원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10조). 이와 같이 징계의 절차는 징계위원회 또는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징계에 대한 불복은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징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인 공증인은 그 결정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지방법원에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러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제32조, 제33조) 이 잠정처분에 대하여도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제36조).

(4) 징계효과 등

정직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반면 면직의 경우 확정적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효과가 있는데, 개인공증인의 경우 공식인 사무실로 간주되고, 고용공증인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위한 6개월 간의 기한이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다. 민사 책임

(1) 개관

프랑스에서 변호사, 공증인 등 전문가에 지우는 민사책임의 특징은 설명·조언의무의 확충에 있고, 안전보호의무와 유사한 설명·조언의무의 경우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공증인도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민사상 책

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³⁸⁾ 이는 공증인이 고객에 지는 이와 같은 의무위반에 기초한 것이다. 즉, 공증인은 형식과 실질에서 유효한 증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거나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다. 그 근거로는 민법 제1992조에 의한 계약책임인지 민법 제1382조, 제1383조³⁹⁾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인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별다른 구별 없이 혼용되고 있다.⁴⁰⁾ 물론 그 요건으로서 귀책사유, 손해발생,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요구되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이지만, 상대적으로 결과책임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다.

민사책임에 대비하여 공증인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증인의 중과실(faute lourde)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된다고 한다. 이러한 책임보험 이외에 공증인 단체에 의한 집단 보증제도(Garantie collective)⁴¹⁾를 통하여도 공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다. 이는 책임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고의적 행위 등에서 비롯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2) 민사책임 형태 내지 유형

① 공무수행담당자로서의 책임

고객으로서 위임받은 공정증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형식상 하자뿐 아니라 고객의 위임내용과 관련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즉, 프랑스 파기원에서 공증인의 민사책임을 인정한 경우를 보면, 서명이나 필요한 증인의 누락, 기타 법령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비밀준수의무에 반하여 집행문을 전달한 경우, 심지어 매도인의 주소부지에 따른 곤란함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② 조언자로서의 의무위반 책임

38) 국가배상책임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민사책임의 성격을 지닌다.

39)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그 손해를 발생한 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민법 제1382조), 그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뿐만 아니라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민법 제1383조).

40) 공증인이 수행하는 직무내용이 국가의 사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성격을 가지느냐 아니면 사적인 수입인, 조언자로서의 성격을 가지느냐에 따라 전자의 경우 불법행위책임으로 후자의 경우 계약책임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조언자로서의 계약의무위반 책임이라 하더라도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법에 의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한다.

41) 지방보증금고(Caisses régionales de garantie)와 중앙보증금고(Caisses centrale de garantie)로 이원화되어 있다.

조언 내지 자문의무는 공증인 역할 가운데 필수불가결한 역할로 되고 있다. 공증인 스스로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등을 확인하여 공증행위 등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프랑스 파기원은 공증인의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폭넓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향에 있다. 사실상 공증인의 의무위반책임에 대하여 그 원인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절대적인 성격의 책임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공증을 예로 들면, 단순히 부동산매수 및 저당권설정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대출이나 세금문제 등에 대하여까지 공증인이 문제되는 상황을 미리 고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공증인은 사실상 고객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 대하여 이 의무를 이행한다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고객의 상황과 관련하여서 이를 면책사유로 주장할 수 없지만 과실상계사유로서 고려할 수는 있다. 이러한 입장은 다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이 참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③ 사용자로서의 책임

공증인은 자신이 고용하는 공증보조인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판례에서는 공증보조인등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경우에도 면책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고 있다.

④ 기타

그 밖에 프랑스 판례를 보면 공증인이 위임받은 공증행위와 관련하여 그 적법성 뿐 아니라 효율성에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예컨대, 건축허가의 무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거나, 고객이 유능하고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제대로 자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판시를 한 바 있다. 나아가 공증인은 다른 공증인의 행위에 관련하여, 사무실 경영자, 집행문정본 전달 대리인 등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VI. 결론 - 공증인에 대한 전망 - 제도개선

위와 같이 프랑스의 공증제도는 부동산거래 및 기업자문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등 프랑스 법률문화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를 비롯한 일상의 거래에서 공증인의 관여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프랑스 공증제도의 여러 특징들에 기인한다. 그 중 중요한 부분을 보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례 등에서 공증인의 책임을 엄격히 적용해 왔

을 뿐 아니라 공증인회의소 등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제도 등을 정비하여 온 점, 공증인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임용자격 보완 및 연수과정 확충을 계속적으로 시도하여 온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프랑스 공중제도는 우리의 공중제도와 상이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공중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프랑스 공중제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